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1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성일종・유용원・신동욱

김위상 • 조경태 • 백종헌

곽규택 · 이종배 · 박덕흠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 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 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 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 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사관학교"를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 략)	제6조(복무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u>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
	<u> </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	1. <u>국군간호사관학교</u>
<u>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	
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	4

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 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 로 하고, 「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u>국</u>
군간호사관학교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